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수수료 부과 절차에 관한 기준

2023.9.25 제정

 	목 차	
제1편	총칙	p1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p2
제3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장) 투자자 정보 (제2장) 투자 권유 (제3장) 설명 의무	p3 p3 p4
- —	L 밖의 투자 권유 유의사항 H융투자상품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p5 p7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P)(투자솔루션2부(자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①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은행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 2. 임직원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은행 또는 권유인력의 소속 부점장이 확인할수 있을 것
- ④ "금융소비자" (이하 "투자자"이라 한다)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 및 청약을 받는 것(이하 "자문계약 체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은행의 거래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⑥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⑦ "고령투자자"란 만65세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 ⑧ "초고령투자자"란 만80세 이상의 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자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1]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고객의 거래목적
 -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 4. 보유 자산 중 금융상품의 비중
 - 5. 연령
 - 6. 기타 필요한 정보
- ② 임직원은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평가결과와 [별지 2]의 「Scoring 기준」에 따라 고객의 거래성향을 안정형, 안 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별지 3]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등급 산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문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별지 4] 「고객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포트폴리오 분류표」를 준수하여 고객별 위험등급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권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3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장 투자자 정보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표에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자성향 결과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 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별지 5]에 의해 투자권유 희망 여부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일반금융소비자가 투자 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 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상담을 종료한다.

제8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 시마다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 파악에 대해 안내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 2장 투자 권유

제9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적합하게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도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문계약 권유를 종료한다.
- ④ 임직원은 투자자문 수행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녹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투자자에게 설명하였음을 녹취하여야 한다. 녹취 의무 대상 고객이 녹취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건전영업행위 에 해당되므로 판매를 중단한다.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별히 유의하여 상담 후 해당 내용을 녹취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5. 관계법령과 은행이 정한 절차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7. 투자권유에 앞서 확인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작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 8.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10.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 3장 설명 의무

제13조(설명의무)

- ① 금융 취약소비자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가입시 유의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 취약소비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만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일반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③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 야 한다.
 -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2. 임직원: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④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자필로 기재한 내용을 투자자 확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투자설명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구조가 복잡한 상품 및 위험도가 큰 상품은 상품의 구조 및 위험에 대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임직원들은 제2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은행이 작성한 상품설명서 등을 상품 설명을 하기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⑧ 상품설명서에는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 및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상품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⑨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4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4조(계약서류의 교부)

- ① 은행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투자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은행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5조(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소법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히고 서면 등으로 신청하여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은행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금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⑤ 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6조(위법 계약의 해지)

- ① 은행은 투자자가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3항,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은행은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 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 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5. 투자자가 은행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은행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조 제3항(신노후 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8조(자료의 기록, 관리 및 투자자제공)

- ① 은행은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 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위법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금소법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등은 10년의 기간동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년동안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

- ① 금융상품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2.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 3.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4.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6. 금소법 제 22조 제3항 및 금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보수에 관한 사항
 - 7.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② 금융상품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금지된다.
 -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자료만 표시하는 행위
 - 2.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행위
 - 3.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다른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 ③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2.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3.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21조(투자자문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점검)

은행은 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편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23조(목적)

본 기준은 법 제58조(수수료)에 의거 은행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자산운용사 등 거래상대방(이하 "투자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보수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적용 범위)

수수료/보수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기준 및 은행의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과 처분, 취득과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2.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산에 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3. "성과보수"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 4. "중도해지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하는 중도해지 수수료 부과 기간 이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26조(수수료/보수의 부과기준)

- ① 은행은 수수료/보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보수는 운용자산의 특성,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27조(수수료/보수의 부과절차)

- ① 은행은 수수료/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문 기본수수료 및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 등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법 제98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보수 계산방법(성과보수 계산방법 포함), 수수료 계산기간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③ 은행은 투자자문 수수료/보수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 계약서를 변경한 후에 인상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보수 체계)

- ① 투자자와 은행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보수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 요율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기본수수료만을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 2. 기본수수료와 성과보수를 지급(이하 "성과혼합형"이라 한다)
- ② 성과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 ③ 성과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수익률(Huddle Rate)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기본수수료의 계산)

- ① 투자자문계약의 기본수수료는 기준금액에 기본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요율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은행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② 수수료 계산시의 기준금액은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가액 중에 투자자와 은행의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제30조(성과보수의 계산)

① 투자자문계약에 따라 운용한 결과 만기일 현재의 투자자산평가액(이하 "만기평가가액"이라 한다)이 기준자산가액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율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다음의 성과보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서 계산한다.

- ② 제1항에서 성과보수 요율은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은행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③ 기준수익률(Huddle Rate)은 은행과 투자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④ 기준수익률은 기준지표(Bench Mark)에 연동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 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률 산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1조(설명의무)

은행은 금소법 제19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보수의 고지)

은행이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수수료/보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금액 등의 투자자문 수수료/보수의 부과에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보수 정보의 공시)

- ① 은행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수수료 부과 절차에 관한 기준 <별지>

2023.9.25 제정

목 차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제2호 투자정보 확인서 Scoring기준

제3호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등급 산출 가이드라인

제4호 고객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포트폴리오 분류표

제5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mark>적합한 상품을 권유</mark> 해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 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mark>선택(V)</mark>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구분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미적용)

금융 취약소비자 해당여부

법인고객 생략

- 금융 취약소비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상품 상담에 앞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금융 취약소비자'에 해당하십니까?
 - 해당없음 (일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절차 진행)
- ☐ 해당됨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우선 설명)

※ 금융투자상품(펀드, 신탁 등) 가입시 유의사항

- ·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정해진 환매(중도해지)수수료 징수기간 이내에 환매(중도해지)하는 경우 환매(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중도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운용자산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비용의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파악된 고객님의 투자성향분석 결과는 <mark>영업점 창구</mark> 및 <mark>온라인</mark>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객님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은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 확인하였음
- 투자자성향분석 결과는 2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최근 24개월 이내 파악한 고객님의 투자자 정보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재사용 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이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경우에 한해 재사용 가능
 - 등의 (과거 투자성향분석 결과 재사용)
- 등의하지 않음 (모든 항목 답변)

② 20대

투자자정보 파악

고객님 사항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V)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질문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Q1. 고객님의 <mark>연령대는</mark>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9세 이하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이상

※ 법인고객 생략

Q2.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법인고객 생략

- ① 3천만원 이하 ② 5천만원 이하 ③ 1억원 이하
- ④ 3억원 이하
- ⑤ 3억원 초과

Q3.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법인고객의 경우 ②번 항목 제외

- ① 현재 일정한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 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② 현재 일정한 수입(연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④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소액연금이 주 수입원임

뒷면에서 계속 →



★ KB 국민은행

투자자정보 확인서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정보 파악 고객님 사항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V)해주시기 바랍니다.				
l . 다음 질문은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Q4. 고객님의 총 자산(부동산 등을 포함)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 이내 ② 30% 이내 ③ 50% 이내 ④ 80% 이내 ⑤ 80% 초과			
Q5. 다음 중 고객님의 <mark>투자경험</mark> 과 가까운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채권형 펀드,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보장형 ELS/ELF 등 ③ 혼합형 펀드, 신용도가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ELS/ELF 등 ④ 주식형 펀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ELF 등 ⑤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ELW, 선물·옵션 등			
Q6.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ELF, ELS) 또는 파생상품투자펀드 (레버리지 펀드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투자 경험이 없으신 경우 포함)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Q7. 고객님의 <mark>금융투자상품에 대한</mark>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높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② 높음 -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③ 낮음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낮음 - 금융상품 중 예·적금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			
Ⅱ. 다음은 해당 투자자금에 대한 질문입니	다.			
Q8. 고객님께서 투자하시는 <mark>목적</mark> 은 무엇입니까?	① 자산 증식(여유 자금 투자) ② 노후 자금 마련 ③ 목적 자금 마련 (결혼자금, 주택 자금 등) ④ 사용 예정 자금 단기 운용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			
Q9.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mark>자금의</mark> <mark>투자기간</mark> 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투자기간과 상관없이 만기일까지 보유 ② 3년 이상 ③ 3년 미만 ④ 1년 미만 ⑤ 6개월 미만			
Q10. 다음 중 현재 투자하는 자금에 대하여 고객님의 <mark>기대하는 수익과 감내 할 수</mark> 있는 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기대수익이 높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② 기대수익이 높다면 20% ~ 100%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③ 원하는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20%이내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④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경미한 수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⑤ 투자원금 보전을 추구한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대리인 신청 시)	보인 의 대리인 서명(인)			
재권유 금지(취소) 확인	지 요청 🔲 재권유 금지 취소 요청 성명 서명(인)			



[별지 2] 투자정보 확인서 Scoring기준

□ 문항별 배점

- o 1번: ①로 응답한 경우 0.5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5점,
 - ④로 응답한 경우 2.0점, ⑤로 응답한 경우 1.5점, ⑥으로 응답한 경우 0.5점
- ㅇ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ㅇ 5번 :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①로 응답한 경우 1.0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5점,
 - ④로 응답한 경우 4.5점, ⑤로 응답한 경우 5.5점
- ㅇ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0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ㅇ 9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5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0점,
 -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⑤로 응답한 경우 0.5점
- ㅇ 10번: ①로 응답한 경우 15점, ②로 응답한 경우 1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0점,
 -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⑤로 응답한 경우 2점

□ 점수 계산 방법

ㅇ 1번, 3번, 5번, 7번, 9번, 10번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만점 36.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3,5,7,9,10번의 합이 24.5점인 경우, 24.5점/36.5점 × 100 = 67.1점

※ 법인인 경우 1번 문항은 scoring하지 않음 (만점 34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단위 : 점)

안정형(A)	안정추구형(B)	위험중립형(C)	적극투자형(D)	공격투자형(E)
A ≤ 43	43 < B ≤55	55< C ≤68	68< D ≤81	E > 81

^{※ (}예시) 상기 67.1점은 위험중립형(C)구간에 속하므로 위험중립형으로 분류

<투자자정보 확인서 Factor-Out 기준>

- □ 5번 질문에 은행 예적금 또는 채권형 펀드, 7번 질문에 낮음 또는 매우 낮음 선택시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가입 제한
- □ 8번 질문에 사용 예정 자금 단기운용, 9번 질문에 1년 미만 또는 6개월미만 선택시 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 □ 9번 질문에 1년 미만 또는 6개월 미만을 선택한 경우 안정추구형/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 □ 10번 질문에 20%이내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선택시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가입 제한
- □ 10번 질문에 경미한 수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선택시 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 □ 10번 질문에 투자원금 보전을 추구한다 선택시 안정형 포트폴리오만 선택 가능

[별지 3]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등급 산출 가이드라인

투자자문 포트폴리오의 투자위험도는 개별 펀드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 하여 산출한다. 각 위험등급별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안정형 포트폴리오
	포트필어포	포드필어포	포드들어포	포드들어포	포드필니エ
포트폴리오	1.00181 - 6.0	200111 - 60	Z 00131 0	40 014 - 60	5.0.0W6.0
가중평균위험도	1.0이상 ~ 6.0	2.0이상 ~ 6.0	3.0이상 ~ 6.0	4.0 이상 ~ 6.0	5.0 이상 ~ 6.0

※ 참고사항

- 1) 가중평균 위험도는 각 등급별 최저 점수를 제한하고, 최대점수는 등급과 상관 없이 6.0 까지로 함.
- 2)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상품 가중평균 위험도 산출 예시

· A펀드 : 투자비중 30% X 위험등급 2등급 = 위험기여도 0.6

· B펀드 : 투자비중 30% X 위험등급 4등급 = 위험기여도 1.2

· C펀드 : 투자비중 40% X 위험등급 5등급 = 위험기여도 2.0

• 포트폴리오 가중평균 위험도 산출 결과 : 3.8

[별지 4] 고객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포트폴리오 분류표

포트폴리오	공격투자형 포트폴리오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안정형 포트폴리오
안 정 형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T 8 8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안정추구형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20 7 78	불가	불가	불가	가능	가능
위험중립형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ਸ਼ਬਣਜ਼ੁਲ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적극투자형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ゴコテヘち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공격투자형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투자권유
¯¯┤ ¯ ᠬ੪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별지 5]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ㅇ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ㅇ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후술하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후술하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정보를 제공함)

은행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상기	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0	네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거래 희망 시 체크불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